

총회제반규칙집

정치치리총람집

2018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회제반규칙집

2018



「2018 총회제반규칙집·정치치리총람집」 발간에 붙여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제102회 총회 주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개혁자들은 믿음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사이에서 공동체의식은 점차 쇠퇴하고, 개교회주의는 성행하고 있습니다. 개별화된 교회들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는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교회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말씀’과 ‘교회’에 대한 공동체적 성찰이 절실한 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교단 안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단의 법과 규칙이 바르게 갖추어져야 합니다. 법규를 다듬어 체계화 하는 것은 우리 교단의 정신과 나아갈 방향을 가다듬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2018 총회제반규칙집·정치치리총람집」은 제102회 총회에서 개정된 법규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자료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가꾸어 나가는데 유익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신설)되고 보완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회 규칙

- 1) 제6장 상임위원회 제13조 (상임위원회) 8. 교회와사회위원회 2항
- 2) 제6장 상임위원회 제13조 (상임위원회) 1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
- 3) 제8장 교육원 제23조 (직원의 선임 및 임기) 1. 원장

2. 고시위원회 규정 제7조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위원회)

3. 목사수련생수련과정 시행세칙 제6조 (목회실습 기간)

4.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정관

- 1) 선교기금관리세칙 제7조 (이율과 취소)
- 2) 선교기금관리세칙 제11조 위약

5. 총회목회신학대학 정관 제6조 (운영), 제9조 (재정)

6. 선교위원회 규정 제9조 (개혁자립선교센터) 삭제

7. 선교위원회 개혁선교헌금(기장인 1인 1만원 헌금) 관리세칙 삭제

8. 3000교회를 위한 비전2015운동본부 규정 삭제

9. 교회와사회위원회 규정 제5장 사업과 선언 제11조 (사회선교사 파송)

10. 사회선교사 운영위원회 시행세칙 신설

11. 생활보장제위원회 규정 제4조 (임기) 삭제

12.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조직)

13. 재정회계 세칙 제6장 출납원과 기장 제22조 (장부의 비치와 기장, 보

존기한)

14. 헌법질의에 대한 헌법위원회 답변 (또는 제102회 총회의 재해석)
 - 1) 해약청원의 처리에 대한 질의
 - 2) 공천된 위원의 생활보장제 헌금 미납으로 인해 교체하여 공천하는 것에 대한 질의
 - 3) 장로의 정년에 대한 질의
 - 4) 교회설립을 하지 않은 개척교회 전도목사에게 준당회장의 권한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5) 당회나 시찰회의 '경유나 거부 확인 없이' 해약청원서나 유임청원서를 바로 노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6)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회에서 당회장이 해약청원의 대상자일 경우 당회장에게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7) 시찰장이 목사해약청원의 대상자일 경우 시찰회 서기가 직접 시찰회를 소집하여 청원서를 경유할 수 있는지, 시찰회 경유 없이 노회에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8) 장로가 1인인 교회에서 장로권고사직을 이행하여 노회에 폐당회 보고서를 제출할 때 노회의 처리에 대한 질의

2018년 1월 31일
총회 총무 이재천

총회제반규칙집

목 차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규칙	13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제반 규정 · 정관 · 세칙	
총회 실행위원회 규정	33
헌법위원회 규정	36
고시위원회 규정	38
-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시행세칙	45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정관	50
- 총회유지재단 유지관리 시행세칙	57
- 장학기금 관리세칙	61
- 선교기금 관리세칙	63
교육위원회 규정	66
- 총회목회신학대학 정관	68
선교위원회 규정	72
국제협력선교위원회 규정	74
교회와사회위원회 규정	77
- 사회선교사 운영위원회 시행세칙	81
- 생태공동체운동본부 시행세칙	85
평화·통일위원회 규정	89
- 평화공동체운동본부 시행세칙	92
양성평등위원회 규정	96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 정관	98
- 총회 연금재단 운영세칙	107
신도위원회 규정	127

재정위원회 규정	129
생활보장제위원회 규정	131
- 무임교역자 생활보장제 지급 시행세칙	135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137
-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139
공천위원회 규정	143
공천업무 시행세칙	145
총회 역사위원회 규정	148
- 총회 역사유적 지정 및 관리 규정	150
- 총회 역사자료관 운영세칙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 규정	162
기독교농촌개발원운영위원회 규정	164
영성수련원 운영위원회 규정	170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와신학연구소 정관	175
- 목회학박사원 정관	180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정관	184
-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운영세칙	194
총회 감사 규정	201
총회본부 처무 규정	206
재정회계 세칙	211
여비 지급 세칙	218
총회 장(葬) 규정	222
총회 의전 규정	223
한국기독교장로회 일반회의 규칙	227
한국기독교장로회 법제업무 규칙	237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기록관리 규칙	245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규칙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라 칭한다.

제2조 (본부)

본회의 본부는 서울 시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총회 산하 지 교회의 일치와 발전을 도모하며 각 노회와 지 교회를 통찰하며 모든 국내 교회 및 세계 교회와 협력하여 한국과 세계를 위하여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교, 봉사, 교육사업을 계획 추진하며, 산하 지 교회와 노회를 지도하고 치리하며, 국내외 교회 간에 친교와 협력 관계를 수립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헌법의 규정에 따라 각 노회로부터 파송된 총대를 회원으로 하되 목사 와 장로를 동수로 하고 당해년도 상회비 납부 노회 총대 중에서 총대 점명 후 회원권이 발동한다. 각 노회의 총대 파송 비율은 전년도 통계 보고에 의하여 무흠 입교인 500명마다 목사, 장로 각 1인씩으로 하고, 250명 이상의 단수에 대해서는 1인씩 추가할 수 있다. 단 총대가 10 명 이상인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 이상의 여성총대를 파송하여야

한다. 총회는 목사인 국제협력선교동역자를 정회원으로 할 수 있다.

2. 초청 언권회원

총회는 초청 언권회원 35인 내외를 총회 실행위원회 추천으로 초청하며 본회와 안전심의부에서 언권을 가진다.

3. 당연직 언권회원

- 1) 증경총회장, 증경부총회장
- 2) 전직 총무
- 3) 총회 총무
- 4) 총대 아닌 위원장-해 위원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발언케 한다.
- 5) 공천위원회 위원

제3장 임 원

제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총 회 장 1인, 부총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서 기 1인, 부 서 기 1인
회 계 1인, 부 회 계 1인

제7조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 회 장

- 1)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회의를 사회하고 통괄한다.
- 2) 총회의 모든 부, 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의하며 지도할 수 있다.
총회장은 임기 중 실행위원회 위원장, 직책상 위원 및 대외 관계 위원직을 제외하고 위원이 되지 못한다.

2. 부총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그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서 기

- 1) 총회의 개최 및 진행의 절차를 준비한다.
- 2) 총대의 천서를 접수하여 총회원의 명부를 작성 배포한다.
- 3) 접수된 사건의 서류를 정리하여 헌의위원에게 인도한다.
- 4) 전회에서 유안된 사건을 총회에 제출한다.

4. 부 서 기

서기를 도와 회의 진행에 따라 각 항 내용을 정리한다.

5. 회 계

총회 재정 회계 사무 규정에 따라 경리사무를 관장한다.

6. 부 회 계

회계를 협조하고 회계가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제8조 (선임 및 임기)

임원의 선임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총회장은 부총회장(목사 1인, 장로 1인) 중에서 등록한 자를 후보자로 하고 투표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임한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 1) 후보 등록자가 경선일 경우에는 결선투표로 선임한다.
 - 2) 단독 후보 등록자일 경우나 총회장 후보 등록자가 유고될 시에는 부총회장 후보 등록자 중에서 투표하여 과반수의 득표자로 선임한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다점자 2인을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로 한다.
2. 부총회장(목사 1인, 장로 1인)은 후보 자격을 갖춘 자가 직접 등록한 후보자 중에서 과반수의 득표자로 선임한다. 득표자가 없으면 다점자 2인을 놓고 결선투표를 한다. 단, 단독 입후보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실격되고, 총회에서 구두 호전을 받은 사람 중 3인을 임지순으로 정하여 투표한다.
3.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4. 기타 임원은 총회장, 선임된 총회장, 부총회장(2인)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으로 선임한다.
5. 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재임기간 중 정년에 해당되면 선임될 수 없다.
6. 임원은 안전심의부 부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7. 총회장, 부총회장은 임기를 마친 후 3년 동안 안전심의부장 및 상임위

원회의 장을 하지 못한다.

제4장 회 의

제9조 (총회)

1. 총회는 매년 1차 9월 중에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 공고와 절차, 총대 명단 및 회의서류는 개회 10일 전에 총회원에게 발송한다.
3. 총회 각 부서 및 위원회는 총회 전에 모여 필요한 보고 안건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4. 총회 각 부서, 위원회 및 노회가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등 모든 서류는 소정 양식에 따라 안건별로 2통씩 총회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행위원회)

총회 운영의 지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회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며 사업을 종합적인 계획 아래 운영하기 위하여 총회 폐회 기간 중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그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5장 안건심의부원 및 정기위원

제11조 (안건심의부)

1. 구성

총회 본회의 안건심의부를 총회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부원 수는 회원 수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1) 정치부 100인 내외
- 2) 법제부 100인 내외
- 3) 선교부 100인 내외
- 4) 국제협력선교부 100인 내외
- 5) 교육부 100인 내외
- 6) 사회부 100인 내외
- 7) 신도부 100인 내외
- 8) 재정부 100인 내외

2. 임무

각 부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1) 정 치 부 : 모든 법규에 따르는 모든 행정 사건에 관한 현의를 심의하여 보고하고 또 그와 관련된 사건을 본회에 제의한다.
- 2) 법 제 부 : 법규에 대해 해석하는 일과 총회의 규칙 및 총회 안의 각 부서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 3) 선 교 부 : 교회 안의 모든 선교에 관한 현의안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 4) 국제협력선교부 : 국제협력선교에 관련된 현의안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 5) 교 육 부 : 교회의 모든 교육에 관련된 현의안과 교회학교 교사 전국연합회와 관련된 현의안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 6) 사 회 부 : 교회 안의 복지와 구호 및 사회의 제 문제에 관련된 현의안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 7) 신 도 부 : 남·여신도회와 청년회에 관련된 현의안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 8) 재 정 부 : 총회 안의 모든 예·결산 및 재정에 관한 현의안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3. 배정과 임기

안전심의부의 각 부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배정되며 임기는 총회 기간 중에 한한다.

- 1) 부원은 한 부서 이외의 다른 부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 2) 정치부원은 목사를 과반수로 하고 재정부원은 장로를 과반수로 한다.
- 3) 각 부의 첫 모임은 그 첫머리의 기명자가 소집한다.
- 4) 총회장, 부총회장이 소속된 노회 총회원은 안전심의부 부장에 선임될 수 없고, 부장으로 선임된 자는 3년간 모든 부서의 부장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또한 동일 안전심의부 부장에 같은 노회의 총회원이 2년 연속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12조 (정기위원)

1. 위원

- 1) 현의위원 2인 - 총회 서기와 총무

- 2) 천서위원 2인 - 총회 서기와 부서기
- 3) 절차위원 3인 - 총회 서기와 총무, 총회 집회 장소 노회장
- 4) 지시위원 2인 - 총회장 지명
- 5) 질서유지위원 2인 - 총회장 지명
- 6) 통계위원 2인 - 총회 전 서기와 총무
- 7) 노회록 감사위원 - 헌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3년조로 하되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총회에서 선정한다.
- 8) 총회주제위원 7인 - 총회 목사 부총회장, 서기, 총무, 교육원장, 한신대학교 총장, 총회 공천위원회 추천전문인 2인(여성 1인 이상)

2. 임무

- 1) 헌의위원
 - (1) 총회가 개최하기 1개월 전에 각 노회 또는 해당 부서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또 직접 안건을 총회에 헌의할 수 있다.
 - (2) 헌의위원 보고는 총회 개최 후 먼저 하며, 언제나 우선 보고할 권한을 가진다.
 - (3) 안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총회개시일 10일 전에 각 총회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2) 천서위원
총회의 천서를 접수하여 회원 명부를 작성하되 분명하지 않는 자가 있을 때는 헌의위원에 회부하여 검사케 한 후 총회에 보고케 한다.
- 3) 절차위원
총회의 회의 진행 절차를 준비하여 총회 개최 10일 전에 각 총회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4) 지시위원
총회의 회의 진행상의 광고 및 모든 지시 사무를 담당한다.
- 5) 질서유지위원
 - (1) 총회에 불참한 회원과 조퇴한 회원의 사유를 청취, 조사하고 허락 여부를 결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 (2)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모든 여건을 미연에 방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 (3) 질서유지위원의 허락 없이 귀가한 회원에 대하여 여비 지출에 따르는 조치를 한다.
- 6) 통계위원
총회 산하 전국 각 지 교회의 교세 통계를 일정한 서식에 의해 각 노회로부터 수집,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7) 노회록 검사위원
매년 7월에 각 노회의 노회록을 검사하되, 노회 서기가 노회록 검사에 직접 참여하여 반도록 한다. 단,
 - (1) 경과 사건을 사실대로 기록한 여부
 - (2) 처리한 사건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처리한 여부
 - (3) 사실을 지혜롭고 공평하며 덕을 세우게 처리한 여부 등을 살펴 어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교정할 것을 총회 시에 보고한다.
- 8) 총회 주제위원
(1) 총회 주제위원은 매해 총회 주제를 선정하여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장 상임위원회

제13조 (상임위원회)

총회의 각종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성 있게 기획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추천위원이 있는 부서 및 위원회는 당 연직을 제외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한 2인을 포함하여 공천위원회가 공천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여성 1인 이상 공천한다. 단 헌법위원회, 총회 재판국, 국제협력선교위원회, 생활보장제위원회, 공천위원회, 한신학원 이사회는 제외한다.

1. 헌법위원회

- 1) 위원은 26인으로 하고 헌법 정치 제16장 제80조 1.에 의하여 조직 하되 공천위원회가 공천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총회 폐회 기간 중 헌법과 제 규칙, 규정 제정 및 개정안을 연구하여 총회에 헌의할 수 있다.
- 3) 총회 폐회 기간 중 헌법 해석의 임무를 맡는다.

2. 고시위원회

- 1) 위원은 각 노회가 추천하여 파송한 1인씩 총 26인(여성 1인 이상)으로 하되 공천위원회가 공천하고 별정 규정을 둔다.
- 2) 목사고시 업무를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다.

3. 총회유지재단 이사회

- 1) 이사는 15인(여성 1인 이상), 감사는 2인으로 하되 공천위원회가 공천하고 별정 재단 이사회 정관을 둔다.
- 2) 총회 소유 부동산을 재단에 편입하여 보존한다.
- 3) 노회와 지 교회의 재산 보존을 위해 협력한다.
- 4) 선교기금 및 장학기금을 관리하며 그 관리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4. 재판국

- 1) 위원은 15인으로 하되 목사 8인, 장로 7인을 공천위원회가 공천하고 그 국장에는 목사위원으로 보한다. 단, 교회 담임목사와 시무장로에 한하며 한 노회에서 2인 이상을 선임할 수 없다.
- 2) 총회에서 위탁한 사건을 심리, 판결한다.

5. 교육위원회

- 1) 위원은 각 노회가 추천하여 파송한 1인씩 위원은 26인(여성 1인 이상)으로 하고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교육원을 지도, 감독, 운영한다.
- 3) 교육원의 예산을 총회에 제안한다.
- 4) 총회의 교육정책을 입안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6. 선교위원회

- 1) 위원은 20인(여성 1인 이상)으로 공천위원회가 공천하고 별정 규정을 둔다.
- 2) 본 교단의 제반 선교 방향을 개발하고 선교적 과제를 창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7. 국제협력선교위원회

- 1) 위원은 각 노회 국제협력선교위원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위원회가 추천한 남·여신도회, 청년회 대표 각 1인으로 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본 교단의 국제협력선교에 대한 정책 입안과 사업을 수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8. 교회와사회위원회

- 1) 위원은 15인(여성 1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회 추천 위원은 2인으로 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본 교단의 사회 정의 구현 및 사회 문제 대책을 강구하여 실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이를 위한 사회선교사를 임명·파송하고 운영 위원회를 두어 관리한다.

9. 평화·통일위원회

- 1) 위원은 15인(여성 1인 이상)으로 위원회 추천 위원은 2인으로 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민족의 염원인 자주적 통일의 성취와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선교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 이를 위한 연구와 협의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0. 양성평등위원회

- 1) 위원은 15인(여성 1인 이상)으로 위원회 추천 위원은 2인으로 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평등하게 창조하신 뜻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동역자 정신으로 교회와 가정, 사회 속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1.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

- 1) 이사는 15인(여성 1인 이상), 감사는 2인으로 하되 공천위원회가 공천하고 별정 재단 이사회 정관을 둔다.
- 2) 총회 연금사업과 가입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

용한다.

12. 신도위원회

- 1) 위원은 13인으로 하되 총회 공천 6인(목사 3인, 여성 1인 이상 포함), 총회 신도부장, 각 신도회 대표 2인으로 하고 별정 규정을 둔다.
- 2) 각 신도회가 함께 연대하여 공동 선교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그 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13. 재정위원회

- 1) 위원은 15인(여성 1인 이상)으로 하되 총회 공천 12인, 총회 회계, 부회계, 재정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총회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기획하여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14. 생활보장제위원회

- 1) 위원은 각 노회 생활보장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총회 산하 교역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생활보장제 사업을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5. 선거관리위원회

- 1) 위원은 공천위원회가 해 총회 목사 회원 6인, 장로 회원 5인을 구성(여성 1인 이상)하고 별정 규정을 둔다.
- 2)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며 화합과 일치 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효율적으로 이룩한다.

16. 공천위원회

- 1) 위원은 각 노회가 선임한 1인씩으로 구성하되 별정 규정을 둔다.
- 2) 총회에서 맡긴 공천 사무를 전담한다.

17. 역사위원회

- 1) 위원은 12인(여성 1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회 추천 위원은 2인으 로 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한국 교회 및 총회와 관련된 역사유적, 유물, 인물, 문화유산, 기록물을 지정, 관리 보존한다.
- 3) 총회 역사자료관을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세칙을 둔다.

18.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회

- 1) 이사와 감사는 본 교단의 목사와 장로로, 교육공무원법 제1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단, 공인회계사인 감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2) 이사는 각 노회가 1인씩 추천하여 파송한 이사로 하되 총장 1인, 이사회 추천 2인, 정관에 따른 개방형이사를 포함하여 26인 내외로 구성하며 총장을 제외하고 1노회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임 기간 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법인이사회가 정한 일정금액을 재정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 3) 감사는 2인으로 하며 개방 감사를 제외한 1인은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총회가 선임한다.
- 4)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5) 한신대학교 총장은 이사회가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6) 목사후보생을 양성하는 신학교육과 일반교육을 담당하는 한신대학교를 운영한다.
- 7) 소정의 정관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

- 1)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3인(이사장, 총장, 신대원장), 이사회 추천이사 2인 총회추천 10인(여성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2) 총회 추천 10인은 4년조와 2년조로 하되 공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가 인선한다.
- 3)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가 선임하고 이사회가 승인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4) 소정의 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0. 기독교농촌개발원 운영위원회

24 / 총회 제반규칙집

- 1) 위원은 15인(여성 1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회 추천 위원은 2인으로 하며 별정 규정을 둔다.
- 2) 기독교농촌개발원을 운영 관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1. 영성수련원 운영위원회

- 1) 위원은 9인(여성 1인 이상)으로 하되, 공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가 인선한다.
- 2) 총회 영성수련원 운영을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2. 목회와신학연구소 이사회

- 1) 본 연구소 이사는 22인(여성 1인 이상)으로 하되 총회 공천 18인, 당연직 2인(한신대 총장, 소장), 이사회 추천 이사 2인으로 하고 그 임기는 4년이다.
- 2) 소정의 정관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3.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이사회

- 1) 본 이사회 이사는 11인(여성 1인 이상)으로 하되 당연직 1인(총회 총무), 이사회 추천 이사 2인, 총회추천 이사 5인, 외부추천이사 3인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이다. 감사는 2인(외부추천1인, 1인은 공인회계사 및 그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이다.
- 2) 소정의 정관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4. 감사

- 1) 3인을 3년조로 하되 목사 1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하고 공천위원회가 공천한다.
- 2) 장로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 3) 총회의 재정 및 업무는 2월과 7월에, 자체 감사가 있는 산하단체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감사하며 실행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 4) 각 상임위원회 감사는 위원장과 서기가 받아야 한다.
- 5) 실행위원회 인권위원이 된다.

25. 특별위원회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장 본 부

제 14조 (본부의 직무)

본부는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집행, 처리한다.

제 15조 (본부 직원)

총무 1인, 부총무 1인, 국장 약간인, 부장 약간인, 간사 약간인, 사무원 약간인, 협동직원 약간인

제 16조 (본부의 직제)

본부에는 총무 산하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어 운영한다.

- 1) 선교사업국 : 선교사업, 정의평화·봉사사업, 에큐메니컬 협력사업, 교육사업 분야 등
- 2) 행정사무국 : 본부의 제반 행정, 서무, 홍보, 출판, 총회 산하 재단, 법인의 업무 등
- 3) 출판부서를 두어 운영한다.

제 17조 (직원의 임무)

1. 총무

- 1) 총회의 업무책임자로서 총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총회 결의를 집행한다.
- 2) 총회의 모든 문서를 접수하고 보관한다.
- 3) 총회 본부 직원의 보직을 명하고 통솔한다.
- 4) 총회 산하 각 기관의 업무를 연계성 있게 조정한다.
- 5) 총회의 각 부서와 위원회에 참석하여 언권을 가진다.

2. 부총무

총무를 보좌하고 유고 시 그의 임무를 대행한다.

3. 국장

총무의 지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해당 부서와 해 위원회에 참석하여 언권을 가진다.

4. 부장, 간사

총무와 해당 국장의 지시 하에 해당 부서의 맡은 직책을 수행한다.

5. 사무원

소속 부서의 일반 업무를 수행한다.

6. 협동직원

소관 업무를 협조 수행한다.

제 18조 (직원의 선임 및 임기)

1. 총무

총대로 선임되지 아니하였어도 가하며, 총무는 부총회장 선거의 규정
에 준하여 선거하고 총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부총무

총무가 제청한 자를 실행위원회에서 출석 과반수로 인준하여 총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3. 국장

총무가 제청한 자를 실행위원회에서 출석 과반수로 인준하여 총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제청권자와 진퇴를 같이 한다.

4. 부장, 간사

총무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사무원

총무가 임명한다.

6. 회계 사무의 직책을 맡은 직원은 재정보증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7. 총회 산하 유급 실무 직원은 총회 총대와 위원회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단, 재단 이사는 예외로 한다.

제 19조 (처무 규정)

본부의 처무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장 교육원

제20조 (교육원의 직무)

교육원은 전도사 교육, 준목 교육, 교역자 계속 교육과 평신도 지도자 교육

등 총회가 위임한 제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정기적인 교재를 출판한다.

제21조 (교육원 직원)

원장 1인, 부장 약간인, 간사 약간인, 일반직원 약간인

제22조 (직원의 임무)

1. 원장

- 1) 교육원의 사업 책임자로서 교육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 총회 결의를 집행한다.
- 2) 교육원의 모든 사업을 관장하며 교육원 직원들을 통솔한다.
- 3) 실행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언권을 가진다.

2. 부장

- 1) 교수부장 - 교육을 계획 실시한다.
- 2) 출판부장 - 정기적인 교재 출판을 담당한다.
- 3) 선교훈련부장 - 선교훈련을 담당한다.
- 4) 교재개발부장 - 교재의 연구개발을 담당한다.

3. 간사, 일반직원

부장의 지시에 따라 맡은 직책을 수행한다.

제23조 (직원의 선임 및 임기)

1. 원장

교육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원장을 추천하고 실행위원회에서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부장

원장이 추천한 자를 교육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하여 총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간사

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회장이 임명한다.

4. 일반직원

원장이 임명한다.

5. 회계 사무의 직책을 맡은 직원은 재정 보증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6. 유급 실무 직원은 총회 총대와 총회의 위원회 위원이 되지 못한다.

제24조 (재정)

1. 사업비는 총회 예산과 국내외의 현금, 프로그램 참가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회계 사무는 총회 재정 회계 규정 및 일반회계 관례에 준하여 처리하며 총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처무 규정)

교육원 처무 규정은 총회 본부 처무 규정에 준한다.

제9장 연합회

제26조 (연합회)

총회는 남·여신도회, 청년회, 교회학교교사전국연합회를 산하에 두며 지도, 보조, 감사한다.

제10장 재 정

제27조 (총회의 재정)

총회의 재정은 각 노회의 상회비와 소속 단체 및 개인이 기부하는 재산과 그밖에 총회가 조성하는 재원으로 충당한다. 상회비는 노회의 재정 실적에 준하여 배정하되 세례교인 부담금으로 한다.

제28조 (상회비의 납입)

상회비는 노회가 4분기로 납입하되 1월초, 5월초, 8월초, 총회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월에서 6월까지를 상반기로 하고 7월에서 12월까지를 하반기로 하여 총회에 전년도 결산을

보고와 함께 상반기 수지상황 보고를 해야 한다.

제30조 (여비 규정)

총회의 여비 규정은 총회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1장 개정 및 시행

제31조 (규칙 개정)

1. 본 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총회 출석 회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본 규칙은 총회에서 통과하고 공포한 후 실시한다.

부 칙

1. 생활보장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교회, 기관의 목사(부목사, 준목, 전도사 포함), 장로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둔다.
 - 1) 총회의 모든 위원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 2) 노회의 모든 피선거권(총회 총대 포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 3) 총회 혹은 노회의 서류 발급을 제한한다.
 2. 각 노회에 속한 지 교회는 개척선교헌금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 ※ 경과조치 : 규칙 변경에 따른 과도기적인 조치는 총회 실행위원회가 강구한다.

1975년 9월	제60회	총회	제정
1976년 9월	제61회	총회	개정
1981년 9월	제66회	총회	개정
1984년 9월	제69회	총회	개정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개정
1989년 9월	제74회	총회	개정
1990년 9월	제75회	총회	개정
1992년 9월	제77회	총회	개정
1993년 9월	제78회	총회	개정

1995년 9월 제80회 총회 개정
1996년 9월 제81회 총회 개정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개정
1998년 9월 제83회 총회 개정
1999년 9월 제84회 총회 개정
2000년 9월 제85회 총회 개정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개정
2004년 9월 제89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06년 9월 제91회 총회 개정
2007년 9월 제92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2012년 9월 제97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제99회 총회 개정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 개정